

등록번호	주택과-15481
등록일자	2015.6.8.
결재일자	2015.6.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주거환경팀장	주택과장	환경도시국장
권은용	정기석	송광덕	06/08 오제성
협 조			

**<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>
정비계획 수립 구역분리 및 준공기한 연기**



**서대문구
주택과**

〈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〉

정비계획 수립 구역분리 및 준공기한 연기

현재 1개의 사업구역으로 용역중인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시등의 구역분리 의견이 있어 2개 구역으로 구역분리하고 이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 등 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.

■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개요

- 용역명 :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
- 도급자 : (주)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+(주)디자인그룹 오즈건축사사무소
(공동수급체) 대표 이동우
- 도급액 : 200,066,300원
- 용역기간 : 2014.08.14 ~ 2015.06.09.

■ 구역분리 및 사유

- 구역현황

구분	구역 분리전	구역 분리후	비고
구역	홍은동10-213 및 8-1093일대 (23재건축해제지역 + 16재개발해제지역)	홍은동 10-213일대 (홍은1구역-23재건축해제지역)	붙임참조 : 홍은동 주거환경관리 사업 구역계
		홍은동 8-1093일대 (홍은2구역-16재개발해제지역)	
면적	55,890㎡	33,450㎡	
		22,440㎡	

○ 구역분리 사유

- 1개구역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“도시교통정비 촉진법”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의2 제3항에 의거 구역면적이 5만㎡이상이 되어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됨
 ※ 용역비 약 10,000,000원, 용역기간 약 3개월 소요
- 23재건축해제지역 및 16재개발해제지역 구역은 물리적환경(도로, 건축물, 주변환경등)과 사회적환경(거주사 현황등) 등이 다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검토 되어 인위적 결합은 관리상 적절치 않음(용역사 검토의견)
- 용역수행 중간보고(‘15.5.12)시 2개구역 분리 의견개진(서울시)

■ 준공기한 연기

사 업 명	용 역 기 간	
	변경 전	변경 후
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	2014.08.14 ~ 2015.06.09	2014.08.14 ~ 2015.12.31

○ 연기귀책 : 세대문구청

- 2개구역 분리에 따른 각 구역별 주민협의체 새로구성 (주민의견 수렴, 마을공동 이용시설 등 마을계획 수립 재 검토 등)
-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이행 기간 소요(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, 구의회 의견 청취 등)

○ 지체상금 부과여부 : 미 부과

■ 조치의견

- 해당 용역사에게 2개구역으로 분리하여 용역수행 및 그에 따른 절차이행등의 기간소요로 용역기한 연기통보.

첨부 : 1) 「홍은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」 용역기간 연장사유서. 1부.
 2) 「홍은동주거환경관리사업」구역계 1부. 끝.